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00 발의연월일: 2024. 6. 20.

발 의 자:김정재·강대식·강명구

강민국・강선영・강승규

고동진 • 곽규택 • 구자근

권성동 • 권영세 • 권영진

김 건 · 김기웅 · 김기현

김대식 · 김도읍 · 김미애

김민전 · 김상욱 · 김상훈

김석기 · 김선교 · 김성원

김소희 · 김승수 · 김예지

김용태 · 김위상 · 김은혜

김장겸 · 김재섭 · 김종양

김태호 • 김형동 • 김희정

나경원 • 박대출 • 박덕흠

박상웅 • 박성민 • 박성훈

박수민 • 박수영 • 박정하

박정훈 • 박준태 • 박충권

박형수 · 배준영 · 배현진

백종헌 · 서명옥 · 서범수

서일준 · 서지영 · 서천호

성일종 · 송석준 · 송언석

신동욱 · 신성범 · 안상훈

안철수 · 엄태영 · 우재준 유상범 • 유영하 • 유용원 윤상현 • 윤영석 • 윤재옥 윤한홍ㆍ이달희ㆍ이만희 이상휘 · 이성권 · 이양수 이인선 · 이종배 · 이종욱 이철규 • 이헌승 • 인요한 임이자 · 임종득 · 장동혁 정동만 · 정성국 · 정연욱 정점식 · 정희용 · 조경태 조배숙・조승환・조은희 조정훈 · 조지연 · 주진우 주호영 · 진종오 · 최보윤 최수진 · 최은석 · 최형두 추경호 · 한기호 · 한지아 의원(10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10일의 휴가(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음)를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데, 자녀 출산 직후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돌봄을 강화하기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음)로 확대하면서 분할사용 횟수를 3회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18조의2제1항, 제3항, 제4항).

난임치료시술에 평균 5~6일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최소한 1회의 시술은 난임치료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확대하며, 그 기간 중 유급휴가일을 '최초 1일'에서 '최초 2일'로 확대하고자 하고, 사업주가 난임치료휴가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안 제18조의3제1항, 제3항).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를 위해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근로자의 경 우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아 기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19조제2항).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 및 학년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하도록 함(안 제19조의 2제1항, 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재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6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 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휴가,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8조의2제1항"을 "제18조의2제1항, 제18조의3제1항 본문"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중 "10일"을 "20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90일"을 "120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1회"를 "3회"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 본문 중 "연간 3일"을 "연간 6일"로, "최초 1일"을 "최초 2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난임치료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만 8세"를 "8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각각 제1항의 육아휴직을 3

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의2제1항 본문 중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이하 "육아기"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 자가 제19조제2항"을 "근로자가 제19조제2항 본문"으로, "기간을"을 "기간의 두 배를"로 한다.

제19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만 8세"를 "8세"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국가는"을 "국가는 육아기 재택근무 등"으로 한다. 법률 제16558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횟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의 첫째 날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난임치료휴가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제1항 본문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간 난임치료휴가 기간의 첫째 날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 제4조(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육아휴직을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
- 제5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
원) ① 국가는 제18조의2에 따른	원) ①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기준법」	배우자 출산휴가, 제18조의3에 따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른 난임치료휴가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출산	
전후휴가급여등"이라 한다)을 지	
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후	②
휴가급여등은 그 금액의 한도에서	
제18조의2제1항 또는 「근로기준	제18조의2제1항, 제18조의3제1항
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	<u>본문</u>
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	
을 이유로 휴가(이하"배우자 출	
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	
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	<u>20일</u>
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 ② (생략)
-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u>90일</u>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u>1회</u>에 한정 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 ⑤ (생략)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이내의 휴가를 주어야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수 있다.

② (생략)

<신 설>

(2) (연행과 살음)
③
120일
120 글
④ <u>3</u> ق]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연간 6일
-l - 00l
최초 2일
② (현행과 같음)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난임치
료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
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③ (생략)

-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 하거나 근로자가 <u>만 8세</u> 이하 또 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 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 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 로 한다. <단서 신설>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 한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9조(육아휴직) ①
<u>8세</u>
2
<u>다만, 같은 자녀를 대상으</u>
로 부모가 모두 각각 제1항의 육
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
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
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
가로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u>12세 이하</u>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이하
<u> "육아기"라 한다)</u>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 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생 략)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⑤ ~ ⑦ (생 략)

제19조의5(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저조치) ① 사업주는 <u>만 8세</u> 이하 또 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 4. (생략)
- ② (생략)
- 제20조(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 제 원) ① (생 략)
 - ② 국가는 소속 근로자의 일 가 ② 국가는 육아기 재택근무 등

②・③ (현행과 같음)
4
<u>근로자</u>
<u>가 제19조제2항 본문</u>
기간의
<u>두 배를</u>
⑤ ~ ⑦ (현행과 같음)
세19조의5(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① <u>8세</u>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데20조(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
원) ① (현행과 같음)

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 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세제 및 재정을 통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법률 제16558호 남녀고용평등과 일 법률 제16558호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4조(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 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의2 및 제1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

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_	-
 _	_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부칙

<삭 제>